의 안 번 호 843 【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1. 8. 25(수)·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9. 6(화)

2. 개정이유

○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 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지원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(안 제4조)
 - 지원기준 정비(셋째아이 이상부터 → **둘째아이 이상부터**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: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

4. **신구조문 대비표** : 따로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
다. 관련부서 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7. 4 ~ 7. 24(의견 없음)

7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
 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저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에사 **둘째아이** 이상으로 조정하고,
 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 등임
- 저출산·고령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출산양 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<u>울</u> 산광역시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<u>신생아</u> 의 부모 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의 사망·이혼·직업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, 부모가 아닌 자와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	②
제4조(지원기준) 울산광역시중구청장 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셋째아이 이상부터 1인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. (입양자녀 포함) 다만,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.	제4조(지원기준)
제5조(지원신청) ① 동장은 출생 신고 서가 접수되면 지원금 지급대상 여 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에 <u>의하여</u> 신청할 수 있도록 안 내 하여야 한다.	제5조(지원신청) ①